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

의결사항

보 건 의 료 기 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보건의료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6729호, 2019. 12. 3. 공포, 2020. 6. 4. 시행)됨에 따라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행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,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3. 5. ~ 4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하”를 “이하 이 조에서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행태
2.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의 현황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

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보건의료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2조(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) ① ----------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회의 및 의사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.	제7조(회의 및 의사) ① ---------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의3(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)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3조의3(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) ① ----------이하 이 조에서 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4조(보건의료 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되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·내용·일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14조(보건의료 실태조사)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 행태 2.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·시설 및 물자 등의 현황 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	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404